

2015-08-11

문서번호 : 대림 분양팀 옥수 2015-002호

수 신 : 대한체육회

참 조 : 총무과

제 목 : 서울특별시 성동구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일원 아파트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되는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 세대수 : 총 공급 1,976세대 중 일반분양 114세대 중 일반특별공급 6세대
 - 분양홍보관 오픈일 : 2015년 08월 28일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일 : 2015년 09월 02일 (예정)
- ※ 상기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업무 협조 요청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되는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
-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일 : 2015년 09월 01일(특별공급 접수 전일)
- 대상자 배정 회신처
 - 1) 전자우편 : wlsyks1@hanmail.net
 - 2) 담 당 자 : 윤진한 차장(HP. 010-3856-1714)
 - 3) 특별공급문의 : 02-313-3133

※ 불 임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1부. 끝.

대 림 산 업 주 식 회 사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분양소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39-8번지 일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39-8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총 25개동, 1,976세대 중 일반분양 114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제19조 제2항 :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관련법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제19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청약예금 :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기준 : 전용면적 / 단위: ㎡, 세대]

구 분	84.92B	84.51C	84.64D	115.90A	115.10B	107.99T	계
세대수	2	3	1	-	-	-	6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7)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